

지하철 연결통로 업무확약 관련 특정 감사결과 공개문

< 감사 개요 >

- 감사기간 : 2018. 7. 31. ~ 8. 3.(4일간)
- 감사대상 : 광주도시철도공사
- 감사범위 :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확약 관련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1건(주의 1)
 - 신분상 조치 : 2건(중징계 1, 기관경고 1)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제 목】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 업무처리 부적정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행 정 상】 주의

【재 정 상】

【신 분 상】 중징계 1, 기관장 경고 1

【지적내용】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금남로 ●가 역(역장1)○○○)에서는 2017. 8. 18. (주)△△△△△△2)(대표이사 ◇◇◇)와 “금남로 ●가역 지하철 만남의 광장과 금남로 ∇∇∇번지에 위치한 신축 ■■■■■ 오피스텔의 지하 1층을 연결 하는 통로를 개설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공사 「직제규정」 제4조, 「사무위임전결 내규」 제3조에 따르면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통할하며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과 업무계획 등을 결정하고, 「업무협약 관리기준(2015.11.)」에 따르면 업무협약 추진부서는 반드시 협약체결의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을 검토하고 협약내용과 관련된 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은 공사를 대표하여 사장이 서명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역장의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역장은 관할 역을 관리감독하고 편의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며 열차운행프로그램 등을 실행·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외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법적 검토를 거쳐 공사를

1)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역장 사무분장표에 따르면 “관할 역 관리감독 및 현장 역무운영 관련 제반 업무 총괄 (명예역장 및 역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역무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 인력운영 및 근태확인 등 복무관리 등)”
2) “금남로 ■■■■■(지하4층/ 지상25층,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가 ●●-●번지)오피스텔” 시행사

대표하는 사장이 협약을 체결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역장은 관할 역을 관리하는 등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사람은 2017. 8. 18. (주)△△△△△△ 대표이사 ◇◇◇ 등이 자신을 찾아와 “직통통로를 뚫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 먼저 확약서라도 체결할 필요가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체결하자”고 제안하자 「업무협약 관리 기준」에 따라 타당성, 적정성 등을 검토하지 않고 지하철 시설물 안전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전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단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광고도 할 수 있고 수송도 증대할 수 있겠다” 싶어 자신의 판단만으로 제안을 수용했다고 진술하면서 “3급으로 13년에 걸쳐 10개 역장을 역임하면서 승진도 못했는데 신임사장께 어필해서 승진 등에 도움이 되고 공사를 대표하지도 않고 협약체결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협약을 잘 체결해서 신임사장에게 잘 보여 어필할 생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위 사람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신임사장에게 잘 보여 오직 자신을 승진시킬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문답을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위 사람은 확약서를 체결하면서 연결통로 개설에 따른 공사비 부담과 시설물의 제한, 재산의 구분과 점용료, 준공 후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와 비용 등³⁾이 확약내용에 포함되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하여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사람은 2018. 1. 22.⁴⁾ 이 건 연결통로 관련 광고수주 진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장 ◆◆◆를 대동하고 금남로 ●가역에 도착하여 (주)△△△△△△ ◇◇◇대표 등과 직통통로 연결 등에 대하여 설명하

3) 「광주도시철도1호선 연결통로 협약서(1998. 9. 30.)」에는 “공사시행의 범위와 규모, 공사비 부담, 공사비 납부, 공사 시기, 시설물의 관리, 협약의 취소·변경 및 승계 등”이 협약되어 있으며 연결통로 대상 토지 등기부 등본, 신청자 사용 인감증명서, 실시설계도 등이 첨부되어 있고 “광주광역시”와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날인함.

4) 당일 점심을 금남로 ●가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 맞은 편 “☆☆☆☆”에서 ◆◆◆도시철도사장, (주)△△△△△△ ◇◇◇대표이사 등 13명이 식사를 하였으며 ◇◇◇가 식사비용 270,000원을 결제했다고 진술함.

면서도 업무확약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는 등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숨기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한편 (주)△△△△△△ ◇◇◇대표는 “2017년 8월경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위 업무확약서를 쏘쏘쏘증권에 제출하였으나 대출은 받지 못하자 대신 2018년 5월경 오피스텔 분양 교육용으로 활용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⁵⁾한 점에 비추어 위 확약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실패하자 효력도 법적 근거도 없는 업무확약서를 오피스텔 분양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더구나 위 사람은 2018. 6. 27. 자신의 상사인 ○○○처장이 자신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업무확약서를 보여주며 “인터넷에 이것이 떠도는데 업체에게 공문으로 확약서를 내리라고 통보하라”고 지시하자 공문도 시행하지 않은 채 전화로만 협조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2018. 8. 2. 감사일 현재 까지도 인터넷상에 그대로 분양 홍보물로 게시되어 있다.

이와 같이 지하 연결통로 개설이 결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효력도 없고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위 사람의 확약서 체결행위로 인하여 (주)△△△△△△는 이를 “대출에 활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보려다가 안 되자 “금남로 ●가 ■■■■■” 분양광고에 사용하여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홍보하자 이를 확인하는 민원⁶⁾(2018. 6.11., 6.21.)이 제기 되었는데도 공사에서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이를 중단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 분양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5) 2018. 8. 6.(월) 14:00경 감사위원회에서 (주)△△△△△△ 대표이사 ◇◇◇와 면담하는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며 오피스텔 분양률은 70%라고 말함.

6) “신축 오피스텔과 금남로 ●가역을 연결하는 지하연결 통로 개설이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제기되자 공사에서는 “지하연결통로 허가권은 관할 구청에 있고 허가가 나면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한다”고 답변함.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은

- ① 금남로 ●가역에서 체결한 업무협약서(2017.8.18.)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시고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협약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관련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업무를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인사규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

○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처 ★★★★★팀장 ○○○

※ 행위당시 금남로 ●가 역장 근무(2016. 7. 1.부터 2017. 8. 31.까지)

광주광역시장은

금남로 ●가역 현장방문 당시(2018. 1. 22.) (주)△△△△△△ 대표이사 ◇◇◇로부터 연결통로 개설 등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뿐, 지하 연결통로 개설이 결정되거나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8년 5월경 “지하철 연결통로 개설이 확정”된 것으로 오피스텔 분양광고에 홍보되고 이를 확인하는 민원이 2회(2018. 6. 11., 6.21.)에 걸쳐 제기 되었는데도 이런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 8. 2. 감사일 현재까지도 사실관계나 경위 등을 조사하거나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수행한 광주광역시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대하여 “기관장 경고” 합니다.